

의안번호	2209342
의 퇴 인	백선희의원
회 답 일	2025.4.23.
추계번호	25D1861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1조의4 (미성년 유가족의 즉각적인 보호 및 지원) 신설	자연재해 등으로 부모를 상실한 미성년 유가족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등을 보호 및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, 국가 등은 지정된 기관에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1조의4 (미성년 유가족의 즉각적인 보호 및 지원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미성년 유가족의 즉각적인 보호 및 지원(안 제31조의4 신설)

-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부모를 상실한 미성년 유가족을 위하여 24시간 운영되는 보호 및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에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－ 현행법에 따라 대규모 재난(항공 사고 등) 발생 시 사망자 신원확인, 심리치료, 법률지원, 보험처리 등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중앙부처가 중심이 된 ‘중앙합동지원센터’를 운영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음

- 예를 들면, 행정안전부는 2025년 3월 울산·경북·경남 산불 피해 발생 시 중앙합동지원센터를 구성하여 민원접수, 구호 및 심리지원, 장례지원, 용자 및 세금·국민연금 상담 등 관계 기관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지원
- 개정안은 피해자 중 부모를 상실한 미성년 유가족의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을 규정하여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등을 보호 및 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라 즉각적인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수, 보호 및 지원기관 수, 기관별 평균 지원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- 참고로, 행정안전부의 「재해연보」와 「재난연감」에 따르면 최근 10년(2014~2023년) 동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414명,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36,593명이고, 해당 사망자의 미성년 유가족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assembly.go.kr